

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

일부개정법률안(대안)

검 토 보 고

I. 주요내용

- 참전유공자에 대하여 의료지원을 실시하는 의료기관의 범위에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가 설립·운영하는 의료기관”을 추가함(안 제7조).
- 6·25참전유공자회 와 월남전참전자회의 회원 자격을 유족까지 확대함(안 제18조 등).

II. 검토의견

1. 의료지원 의료기관의 범위 명확화(안 제7조)

현행 제7조제1항¹⁾은 참전유공자의 의료지원 의료기관으로서 보훈병원을 포함하는 국가의 의료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의료기관을 규정하고 있음.

개정안은 참전유공자에 대한 의료지원 의료기관의 범위에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가 설립·운영하는 의료기관(공공단체의료기관)”을

1) 제7조(의료지원) ① 참전유공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·운영하는 의료기관(「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」 제7조에 따른 보훈병원을 포함한다. 이하 같다)에서 진료를 받는 경우 그 진료비용(약제비용을 포함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은 본인이 부담하게 될 비용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(減免)하며, 그 감면된 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.

추가하고 있으나, 세 개의 기관을 하나의 문장으로 나열하여 명확하지 않은 측면이 있음.

따라서, 지원대상 의료기관의 종류를 명확히 하기 위해 유사입법례²⁾와 다른 관계 법률 개정안³⁾을 참고하고, 국가보훈부와 협의하여, 제7조 제1항에 규정된 의료기관의 종류를 각 호로 규정하는 수정의견을 마련 하였음.

< 안 제7조제1항에 대한 수정의견 >

개 정 안	수 정 의 견
제7조(의료지원) ① 참전유공자가 국가의 의료기관(「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」 제7조에 따른 보훈병원을 포함한다)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의료기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가 설립·운영하는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는 경우 그 진료비용(약제비용을 포함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은 본인이 부담하게 될 비용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(減免)하며,	제7조(의료지원) ① ----- 다음 각 호의 의료기관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

2) 「석면피해구제법」 제44조(진찰요구 등) ① 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결정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석면피해인정 및 구제급여를 받은 사람 또는 이를 받으려는 사람에게 다음 각 호의 의료기관에서 진찰 및 검사 등을 받을 것을 요구할 수 있다.

1. 「산업재해보상보험법」 제10조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이 설치·운영하는 의료기관
2. 「국민건강보험법」 제42조제2항에 따른 전문요양기관
3. 삭제
4.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기관

3) 5·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대안, DD20607),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대안, DD20603),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강준현의원안, 2204675),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대안, DD20604),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대안, DD20605),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대안, DD20608)

그 감면된 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.	-----. 1. <u>국가의 의료기관</u> [「한국보훈복지 의료공단법」 제7조에 따른 보훈 병원을 포함한다] 2. <u>지방자치단체의 의료기관</u> 3. <u>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가 설립·운영하는 의료기관</u>
---------------------	--

2. 참전유공자회 회원 대상 유족의 범위 명확화(안 제42조)

개정안 제18조제1항, 제18조의2는 참전유공자회 회원자격을 참전유공자에서 참전유공자의 유족까지 확대하고 있으나, 현행 「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은 유족범위에 대한 정의규정이나 명문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유족범위에 대한 해석이 명백하지 않음.

따라서 국가보훈부와 협의하여, 참전유공자회 회원 대상인 유족범위를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5조제2항에 따른 배우자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자녀로 한정하는 수정의견을 마련하였음.

< 안 제18조제1항에 대한 수정의견 >

개 정 안	수 정 의 견
제18조(대한민국6·25참전유공자회의 설립) ① <u>6·25전쟁 참전유공자와 그 유족</u> 상호 간의 상부상조를 통한 친목을 도모하고 회원의 권익을 향상하기 위하여 대한민국6·25참전	제18조(대한민국6·25참전유공자회의 설립) ① <u>6·25전쟁 참전유공자와 그 유족(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5조제2항에 따른 배우자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자녀, 이하 같다)</u>

유 공 자 회(이하 “6·25참전유공자회” 라 한다)를 둔다.	상 호 간 의 상 부 상 조 를 통 한 친 목 을 도 모 하 고 회 원 의 권 익 을 향 상 하 기 위 하 여 대 한 민 국 6·25참전유공자회 (이하 “6·25참전유공자회”라 한다) 를 둔다.
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	--

그 밖에 개정안의 체계와 자구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, 경미한 자구
수정 외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보았음(주서본 참조).

참고로, 기획재정부는 보훈단체 회원 수 확대에 보훈단체 재정지원에
영향을 받지 않는 전제하에 수용하겠다는 의견임.

(수석전문위원 정 환 철)